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4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손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여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자본 부담을 완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jjks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